옥천군 공고 제2019 - 731호

옥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8월 09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

2. 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 도모 및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라 군수가 시장으로 구역을 인정함을 규정함(안 제3조).

○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세부적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 전통시장의 기준 및 인정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제6조부터 제9조까지)

○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및 지정 절차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 상인회 설립 및 등록 효율적인 시장관리를 위하여 시장관리자 지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

○ 시장 등에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4. 제정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5. 의견제출

○ 「옥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0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경제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62, FAX : (043)731-291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밖에 옥천군 관내 전통시장의 육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군수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등록한 시장을 말한다.
3. "상인"이란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5.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

다.

6.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옥천군(이하“군”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안과 밖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7.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8.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 ·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9.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시장의 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법 제2조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 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7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

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옥천군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소방·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가능한 경우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3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 전통시장의 기준 및 인정

제6조(전통시장의 기준 등)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영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같은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른 점포로 본다.

② 전통시장구역은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

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7조(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3호가목부터 마목과 제4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8조(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①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9조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① 군수는 영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관리 등

제10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1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절차) 군수는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변경)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4장 임시시장의 신고·관리 등

제13조 (임시시장의 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 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임시시장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5조 (임시시장 신고의 수리 취소)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시시장 신고를 수리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개설신고한 경우
2. 임시시장 개설신고 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그 밖에 타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5장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지원

제16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군수는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군수가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제19조(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20조(상인회의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제22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상인회를 등록하려는 대표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상인회 등록 취소) ① 군수는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자를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영 제2조에 따

른 전통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군수는 그 내용을 군이 발행하는 군보에 공고 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군수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3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군수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자발생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와 제6호의 서류는 10년 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 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간 보관한다.

제25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7장 시장관리자의 지정

제26조(시장관리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 군수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2.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단,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8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29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와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

2. 제1호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군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의한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

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군이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군・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0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옥천군 주차장 조례」,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영 제7조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제31조(공유재산의사용 · 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군수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횟수는 1회로 한정하며, 조건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와 계약으로 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조건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와 계약으로 정한다.

제32조(사용료 및 비용의 징수 등)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옥천군 주차장 조례」 및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군수와 별도로 협약을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및 필요경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군수는 매년 수익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자는 징수한 수익금을 사용료 및 주차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남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옥천군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제외한다.

제34조(지도 ·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5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군수는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①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동의를 군수가 해당 사업추진계획을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 할 수 있다.

②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군수를 통하여 해당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③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철회서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등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 주소)
2.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
3. 토지 등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장 과태료 부과·징수등

제37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3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법률」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옥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의　　견